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박성훈**·최이문***

국 | 문 | 요 | 약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국가권력 중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제는 사법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이라는 목표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이 있는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2003-2004)과 시행이후(2013-2014) 양형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와 강도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먼저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범죄유형(강간치상, 강도상해/치사)에서 유의미하게 처벌이 강화된 반면, 신체적 피해가 없는 범죄유형(강간, 강도)에서는 처벌 강도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할 법원 간 양형 편차는 성범죄와 강도범죄 모두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형량선고 시 양형인자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도범죄의 경우 큰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우리나라의 양형 관행은 형평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시행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이후 양형관련 정보의 공개, 양형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논문은 개략적이거나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주제어 : 양형, 양형기준, 토빗분석, 성범죄, 강도범죄

* 이 논문은 2016년 6월 15일 개최한 제7회 형사사법포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의 일부내용을 새롭게 분석한 것임을 밝힌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심리학 박사

I.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양형기준의 도입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7년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양형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부터 살인범죄, 성범죄, 뇌물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죄, 위증범죄, 무고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5개의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다.¹⁾ 양형기준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법계에 속한 나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우리나라의 양형실무가 그만큼 국민들로부터 불신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관예우에 의한 양형의 왜곡’, ‘불공정한 양형편차의 존재’, ‘집행유예의 남발’, ‘화이트칼라 범죄에 있어서의 관대한 양형’ 등을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한다.²⁾

1980년대부터 양형기준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재사회화(rehabilitation)에 기초한 형사사법제도(부정기형, 가석방, 중간처우, 다양한 유예제도)가 재범예방과 범죄억제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형사사법제도가 응보이념에 근거하여 책임원칙과 비례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³⁾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발표된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양형기준의 도입 이후 양형편차가 줄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양형기준이 양형편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실증적 연구들은 양형기준이 인종과 계층에 따른 양형편차를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양형기준이 재범률이나 수감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⁴⁾

이처럼 동일한 형사사법제도이기는 하나 미국과는 다른 맥락 속에서 도입된 우리

1) 양형위원회, 2016 양형기준, i 면.

2) 이주형,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1호 2009. 47면.

3)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2010. 74면.

4) 박성훈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2015. 141-144면.

나라의 양형기준제도는 시행된 지 그리 많은 시간이 경과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형기준제도가 시행된 이후 양형실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양형기준의 목표⁵⁾는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실증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국민들은 개별 범죄에 대한 특수정보보다는 양형의 수평적 형평성, 즉 유사한 범죄라면 유사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고무줄 양형’ 혹은 ‘불공정한 양형’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것이다. 양형기준은 개별 범죄에서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를 명시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수평적 형평성을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⁶⁾ 양형기준의 원칙 가운데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인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조합에 따라 다른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특별양형인자를 서로 대등하게 기계적으로 간주하여 권고영역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방법을 택한 이유는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⁷⁾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도의 목표 가운데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양형의 균등성과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양형실무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5)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화는 물론 양형실무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구현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형위원회, 2007년 연간보고서. 2008. 27면.

6)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양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양형기준제의 목표와 관련해 교수집단은 양형의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검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양형의 형평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법조계 실무자들 역시 양형기준제 시행이 양형의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탁희성 외(201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40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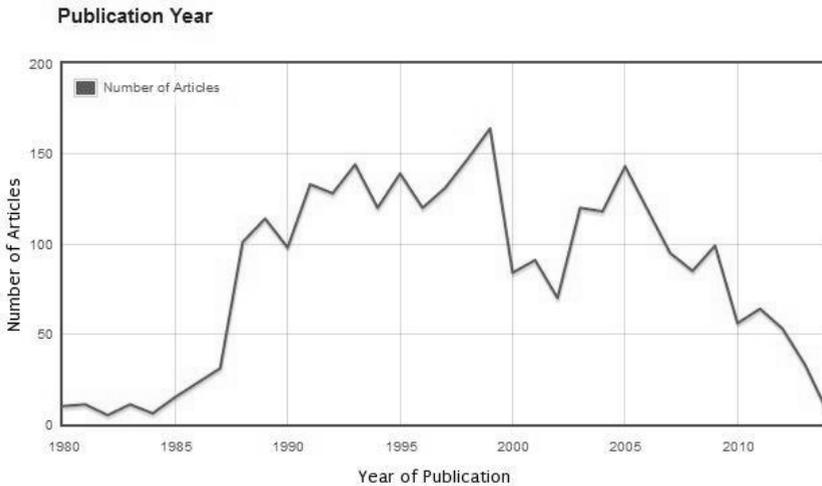
7) 서보학,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법연구 23(4), 2011. 62면.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외국의 연구경향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양형기준제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개관하기 위해 계량적인 문헌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 제이스토(Journal Storage: JSTOR)⁸⁾에 입력되어 있는 198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양형기준과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였다.⁹⁾

[그림 1] 미국의 양형기준 관련 논문발표 추이, 1980-2014 (단위, 건)



1980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2,888건의 양형기준제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양형기준제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직후인 1987년부터 양형기준

8) JSTOR는 학계가 신뢰할만한 자료들을 검색 및 이용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1995년 설립된 이후, 제이스토 자료 보관소에는 학문 연구에 필요한 일차 자료들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 과학 분야에 걸쳐 폭넓은 학술 출판물들 9백만 건이 보관되어 있다.

(<http://about.jstor.org/sites/default/files/misc/jstor-factsheet-20120213.pdf>, 2016년 8월 1일 확인).

9) 분석을 위하여 R프로그램과 'JSTOR' 코드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으로 JSTOR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색인에 'sentencing guideline'을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2015년 2월 1일 검색하였다.

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2000년도 초반에는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2005년 ‘부커(Booker) 판결’¹⁰⁾을 전후하여 양형기준제의 의무적 속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색인에 포함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에는 처벌, 형량, 가석방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향은 양형기준이 수정헌법 6조에 따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Blakely v. Washington*, 2004¹¹⁾); *United States v. Booker*, 2005)에 대한 연구들로 양형기준이 의무적인지(mandator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두 번째 방향은 양형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제의 목적 중 하나는 피고인의 인종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제가 이러한 목적을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양형의 형평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 판사들 간에 혹은 사건들 간에 양형 편차가 줄어들었는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일레로 호퍼와 동료들(Hofer et al.)은 양형기준제 시행 전(1984-1985)과 시행 후(1994-1995) 간 연방법원 관할 사건의 양형 편차를 분석했다.¹²⁾ 그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 전 판사들의 양형의 편차는 전체 형량의 2.32퍼센트였으나,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에는 1.08퍼센트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앤더슨과 동료들(Anderson et al.)은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판사들 간의 양형편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에는 양형 편차가 4.9개월에서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에는 3.9개월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¹³⁾.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양형기준제의 시행이 양형편차의 해소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2005년 부커 판결이후 양형기준제가 권고적 성격으로 변화한 후에는 다시금 양형편차가 커지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10) *United States v. Booker*, 543 U.S. 220 (2005).

11) *Blakely v. Washington*, 542 U.S. 296 (2004).

12) Hofer, P. J., K. R. Blackwell, and R. B. Ruback, The effect of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on inter-judge sentencing disparit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999.

13) Anderson, J. M., J. R. Kling and K. Stith. “Measuring interjudge sentencing disparity: Before and aft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2(S1), 1999.

하였다. 양(Yang)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0만명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가 권고적 속성으로 변환 이후 인종 간 양형 편차가 두 배 가까이 다시 커졌음을 보여주었다.¹⁴⁾

〈표 1〉 미국의 양형관련 연구의 키워드 분석 결과, 1980-2014

연번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01	offense	offense	defendant	judge
02	defendant	defendant	offense	offender
03	judge	crime	crime	justice
04	crime	state	judge	offense
05	state	offender	offender	booker
06	offender	judge	justice	defendant
07	probation	departure	state	crime
08	federal	justice	supra	state
09	supra	probation	federal	disparity
10	congress	united	prosecutor	sentencing
11	judicial	congress	judicial	mandatory
12	justice	judges	prison	prosecutor
13	district	prison	amendment	district
14	prison	circuit	punishment	prison
15	punishment	judicial	congress	judicial
16	attorney	prosecutor	sentencing	system
17	departure	federal	booker	amendment
18	judges	conduct	case	congress
19	discretion	punishment	departure	policy
20	parole	discretion	mandatory	united

미국의 양형기준 관련 실증적 연구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형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실제 양형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국민들 역시 양형자료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높으며, 정책적인 영향력도 크다고 하겠다.¹⁵⁾

14) Yang, C. S. Free at Last? Judicial Discret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Federal Sentencing.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44(1), 2015.

15) 미국 연방법원의 양형 자료는 공개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미국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2. 국내의 연구경향

국내에서 이루어진 양형기준제도 관련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외국의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검토,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양형기준의 준수율 및 양형인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나뉘 볼 수 있다.¹⁶⁾ 이 가운데 실증연구들은 다시 양형인자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법률 외적요인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형기준의 준수율에 대한 분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양형기준제 실시 전후로 구분해 보면, 양형기준제 실시 이전에는 양형인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장영민·탁희성은 강절도범죄 901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연구했다. 그 결과 ‘동종전과 유무’, ‘누범여부’, ‘재범기간’ 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계획적 범죄’, ‘공범여부’, ‘구속 여부’ 등의 요인들이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¹⁷⁾ 노성호와 동료들은 서울지역 성폭력 관련 판결 789건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고,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차이가 클수록 형량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했다.¹⁸⁾

양형기준제 실시 이후에는 주로 선고형량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미랑·이민식은 성범죄 355건을 대상으로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을 분석했다.¹⁹⁾ 그 결과 ‘미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인자가 중요하며, 전반적으로는 일반양형인자보다 특별양형인자가 형량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의 김혜정·기광도의 연구에서는 횡령배임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양형인자는 선고형량에 거의 영향을

Commission)는 관련 법령에 의거, 양형기준제와 관련되어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양형과 관련되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삭제한 전산화된 양형 정보를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대학간 컨소시엄(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ICPSR)의 데이터 베이스에 공개하고 있다.

- 16) 박성훈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2015. 13면.
- 17) 장영민·탁희성,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1993.
- 18)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1999.
- 19) 박미랑·이민식,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 현황 분석, 저스티스 통권127호 2011.

미치지 못한 반면에 특별 양형인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양형기준제에 대한 평가의 하나의 척도로 양형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홍대운·강정민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199건에 대해 양형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한 결과, 횡령배임액수가 높아질수록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양형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²¹⁾

3. 연구문제의 설정

이처럼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 발표된 양형기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국내연구의 경우 미국의 연구와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우선 국내 연구자들은 전체 양형자료보다는 연구자에 따라 접근가능한 양형자료만을 분석하고 있다. 일례로 장영민·탁희성의 연구에서는 서울, 대전 등 9개 지역 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한 강·절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박미랑·이민식의 연구에서는 검찰의 구형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에 비해 김혜정·기광도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게 횡령배임죄 판결문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의 연구결과는 자료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한적인 연구자들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대한 검증이나 새로운 분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미국 연구들은 양형기준 전후의 실제 양형 형태를 비교하는데 반해 국내 연구들은 양형기준제 준수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양형기준제를 평가하기 위해 실제 양형기준의 목적²²⁾을 이루고 있는지, 양형기준제 전후 양형패턴이 변화가 있는지, 특정 판결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양

20) 김혜정·기광도,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2015.

21) 홍대운·강정민,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연구 47 2013.

22) 미국의 경우 양형기준제의 도입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불균형(Sentencing Disparity),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수감율(Imprisonment Rates) 조절, 교도소 과밀(Prison Overcrowding) 해소 등이다. 거의 모든 주와 연방정부의 양형기준제에서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양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성별 인종과 같은 요인들에 의한 불공정한 양형 편향을 줄이는 것이다. 28 U.S.C. § 994 (f) (1988).

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들은 양형기준제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양형기준의 준수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형기준의 준수율 정도에 기반한 양형기준제의 평가는 양형기준제가 얼마나 잘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제의 도입 목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양형기준제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양형기준제 시행전후 양형실무에 변화가 있는지, 만일 변화가 있다면 양형위원회가 표명한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양형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제고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²³⁾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양형의 형평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시행이전과 비교해 양형편차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의 객관성 측면에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양형인자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을 기준으로 이전의 양형실태와 이후의 양형실태를 비교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전후 선고형량 및 집행유예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시행이전에 비해 양형인자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성범죄와 강도범죄의 판결문이다.²⁴⁾ 양형기준제 전후 양형

23)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양형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양형기준제의 목표와 관련해 교수집단은 양형의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검사 집단과 변호사 집단의 경우에는 양형의 형평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법조계 실무자들 역시 양형기준제 시행이 양형의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탁희성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VI):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2010. 403면.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양형기준제 시행을 전후로 각각 2년 동안의 1심 판결문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서울지방검찰청(중앙, 남부, 동부, 북부, 서부)과 경기지역 지방검찰청(인천, 수원, 의정부) 등 총 8개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 중에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 기간인 2003-2004년과 시행이후 기간인 2013-2014년의 1심 판결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대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1개월 동안 분석대상에 포함되는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범죄, 강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세부범죄유형과 대검찰청의 범죄분류 예규를 함께 고려하여 1차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체 사건 수를 수집하였다. 그 가운데 사건 수가 많은 범죄유형을 2차로 선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실제 판결문이 등록되어 있는 사건을 세부범죄유형별로 수집하였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합사건은 사례수의 부족과 분석의 편의를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가. 성범죄

성범죄에서 사건 수가 가장 많은 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범죄를 분석하였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판에서 무죄판결이나 통상회부된 경우, 경합범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성범죄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은 총 747건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 352건, 시행이후가 395건으로 조사되었다.

24) 이 논문의 분석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연구에서 수집한 판결문 중 일부로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재분석한 것이다. 성범죄는 양형과 관련하여 불만이 높은 범죄 유형의 하나이며, 강도범죄 역시 대표적인 강력범죄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표 2〉 성범죄 세부유형별 표본 수

(단위: 건, %)

구 분	2003-2004	2013-2014	합계
전 체	352 (100.0)	395 (100.0)	747 (100.0)
강간	15 (4.3)	66 (16.7)	81 (10.8)
주거침입강간	62 (17.6)	32 (8.1)	94 (12.6)
친족에 의한 강간	14 (4.0)	4 (1.0)	18 (2.4)
준강간	5 (1.4)	51 (12.9)	56 (7.5)
특수강간	13 (3.7)	11 (2.8)	24 (3.3)
강간상해	51 (14.5)	18 (4.6)	69 (9.2)
강간치상	140 (39.7)	81 (20.5)	221 (29.6)
강제추행	52 (14.8)	132 (33.4)	184 (24.6)

나. 강도범죄

강도범죄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8개 검찰청에서 기소된 사건 중에서 형법을 중심으로 한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에 해당되는 사건의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사례수가 적은 이유는 강도범죄의 발생건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일차적인 이유로 여겨진다.²⁵⁾ 또한 자료수집 당시 2014년도 판결문이 아직까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강도범죄 세부유형별 표본 수

(단위: 건, %)

구 분	2003-2004	2013-2014	전체
전 체	235 (100.0)	110 (100.0)	345 (100.0)
강도	36 (15.3)	15 (13.6)	51 (14.8)
준강도	47 (20.0)	16 (14.5)	63 (18.3)
특수강도	42 (17.9)	41 (37.3)	83 (24.1)
강도상해	97 (41.3)	35 (31.8)	132 (38.2)
강도치상	13 (5.5)	3 (2.8)	16 (4.6)

25) 대검찰청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03년기준 강도범죄의 발생건수는 7,327건(발생비 15.31건)에서 2014년기준 1,618건(발생비 3.0건)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분석 방법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은 모든 종속변인의 값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표본에 따라서는 일부 종속변인의 값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종속변인의 값이 제한적일 때, 특히 ‘센서드(censored)’ 형태²⁶⁾일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 토빗모형(Tobit model) 모형이다.²⁷⁾

이 논문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선고형량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형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 특정한 값에서 분포가 ‘절단된 형태(pile-up)’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모형보다는 MLE(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기초한 토빗모형이 적절한 분석방법이다.²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의 효과를 회귀모형과 토빗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IV. 성범죄 양형실태 비교

1. 양형기준제 전후 선고형량의 변화

가. 세부 범죄유형별 비교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간에 대한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은 평균 28.09개월, 시행이후는 평균 28.85개월로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다만,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 이후 표준편차는 8.27개월에서 10.52개월로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센서드(censored)란 어떤 변인에서 응답이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값이 발견되지 않고 특정한 값에 그 이하의 값이 쌓이는(pile-up) 형태의 분포를 의미한다.

27) Long, J. Scott.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1997. 187면.

28) Wooldridge, Jeffrey M. Introductory Econometrics, 2013. 536-543면.

〈표 4〉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간 형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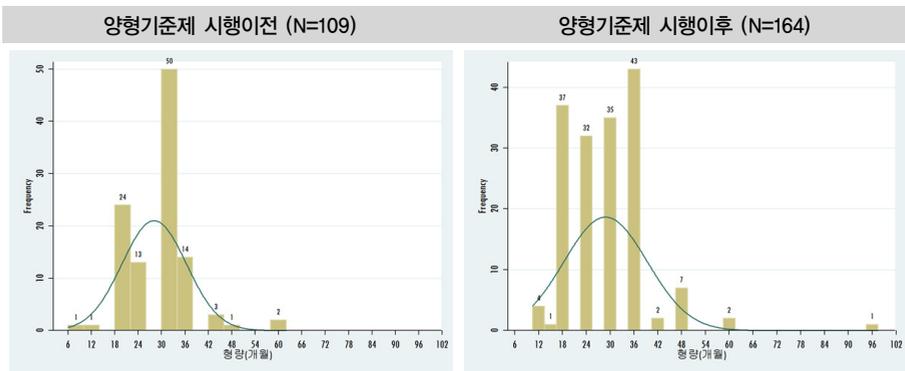
(단위: 개월)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간	이전	(109)	28,09	8,27	-0.63
	이후	(164)	28,85	10,52	

*p<0.05 **p<0.01

이처럼 평균 선고형량만을 비교했을 경우 강간에 있어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간에 대한 선고형량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변화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강간에 대한 선고형량이 30개월(50건, 45.9%)인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36개월(43건, 26.2%)이 가장 많았고,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비교해 18개월(37건, 22.6%), 24개월(32건, 19.5%), 30개월(35건, 21.3%)의 빈도분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강간 선고형량의 변화



* 강간에 포함되는 세부 유형: 강간, 주거침입강간, 준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

특히 시행이전에는 48개월이 1건(0.9%)이었던 반면 시행이후에는 7건(4.3%)이 나타나고 있어 3년 이상의 선고형을 내린 경우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간에 대한 선고형량의 표준편차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하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강간에 대한 형량선고 시 모종의 합의된 평균형량(예를 들어, 30개월)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동일한 강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선고형량이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범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은 평균 30.88개월, 시행이후는 평균 44.12개월로 선고형량이 약 14개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표준편차 역시 8.73개월에서 21.45개월로 편차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간상해·치상 형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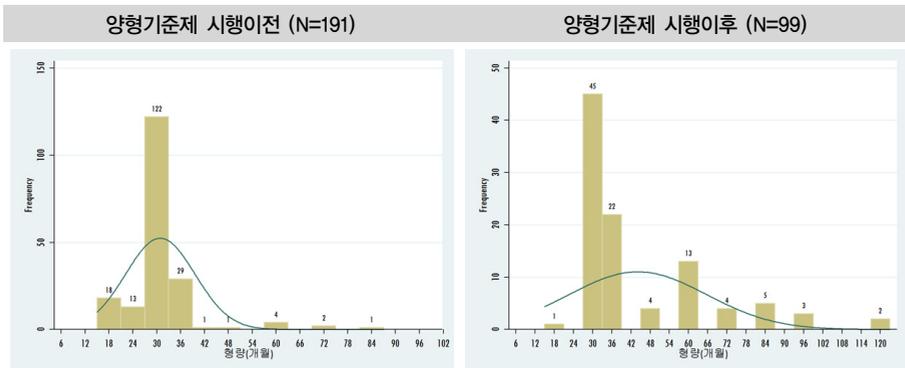
(단위: 개월)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간상해·치상	이전	(191)	30.88	8.73	-7.44**
	이후	(99)	44.12	21.45	

*p<0.05 **p<0.01

강간상해·치상의 선고형량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상당수가 30개월(122건, 63.9%)을 선고받았던 데 비해 시행이후에는 30개월(45건, 45.5%)은 줄어드는 반면 60개월 이상(60개월 13건, 72개월 4건, 84개월 5건, 96건 3건, 120개월 2건 등 모두 27.3%) 중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강간상해·치상 선고형량의 변화



강제추행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평균 선고형량이 8.70개월, 시행이후의 평균은 7.16개월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평균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형량의 표준편차 역시 시행전후 각각 3.63개월, 3.68개월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제추행 형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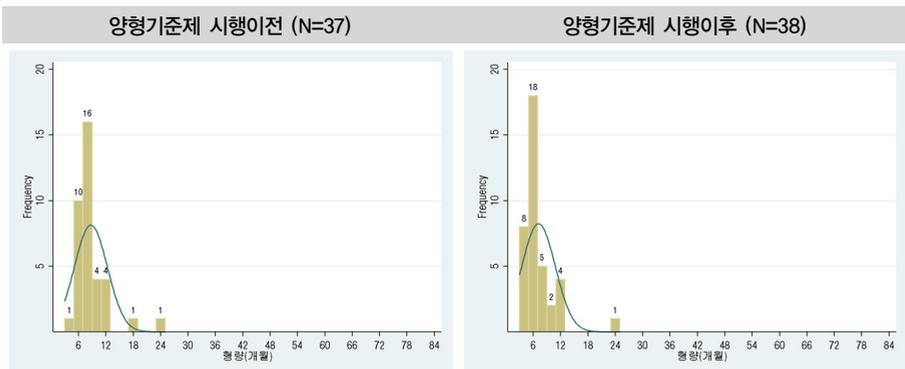
(단위: 개월)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제추행	이전	(37)	8.70	3.63	1.83
	이후	(38)	7.16	3.68	

*p<0.05 **p<0.01

강제추행의 선고형량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행이전에는 8개월(16건, 43.2%)을 선고받은 비율이 가장 많은 가운데 대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선고형량 분포가 밀집되었던 반면, 시행이후에는 6개월(18건, 47.4%)을 선고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선고형량의 분포가 4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강제추행 선고형량의 변화



따라서 강제추행의 선고형량에 대한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전반적으로 강제추행에 대한 실제 선고형량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법원 간 선고형량의 편차

다음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양형편차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의 법원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 이전에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행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법원 간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범죄 세부유형별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법원1과 법원8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적어도 법원 간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편차는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으며, 법원 간 양형편차의 감소가 대부분 형량이 증가하는 형태로 수렴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표 7〉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법원 간 성범죄 형량의 편차

(단위: 개월)

	이전			이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계	(337)	27,54	10,58	(301)	31,33	18,78
법원1	(60)	30,20	13,18	(42)	30,14	17,26
법원2	(46)	24,61	11,23	(30)	30,03	21,11
법원3	(31)	25,29	8,11	(34)	33,65	19,63
법원4	(14)	26,86	6,92	(37)	27,95	9,39
법원5	(67)	25,61	10,91	(47)	29,96	15,38
법원6	(52)	28,85	5,83	(40)	37,00	25,93
법원7	(21)	25,52	7,07	(29)	31,17	19,28
법원8	(46)	31,00	12,09	(42)	30,81	19,20
F값		2,58 [*]			0,85	

*p<0.05 **p<0.01

2. 양형기준제 전후 집행유예의 변화

흔히 언론을 통해 관대한 형벌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강간 및 강간상해·치상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집행유예의 비율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강간의 경우 시행이전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65.0%로 시행이후 46.0%까지 낮아졌고, 강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73.0%에서 47.0%로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성범죄 세부유형별 집행유예 비교

(단위: 백분율)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간	이전	(109)	0.65	0.48	3.09**
	이후	(164)	0.46	0.50	
강간상해·치상	이전	(191)	0.73	0.45	4.38**
	이후	(99)	0.47	0.50	
강제추행	이전	(37)	0.62	0.49	-1.89
	이후	(38)	0.82	0.39	

*p<0.05 **p<0.01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성범죄에 관한 친고제가 전면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전 같으면 공소기각 되었을 사건이 대부분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경향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이전보다 집행유예의 요건이 훨씬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²⁹⁾ 다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62.0%에서 82.0%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범죄 양형인자의 변화

성범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고형량을 종속변

29) 집행유예의 경우 성범죄와 강도범죄 모두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법원 간 집행유예비율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지면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으로 하고, 양형기준 상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³⁰⁾, 그리고 양형인자 이외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모형을 살펴보면(<표 9> 참조), 선고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친족관계, 중한 상해,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으로 나타났다. 양형인자 이외의 변인으로는 여성법관의 포함여부, 국선변호인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형량이 약 5개월 정도 증가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약 6.9개월 형량이 증가하였으며, 경미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형량이 약 5개월 증가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사건당시 가해자가 심신미약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 5개월 정도 형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판부에 여성법관이 포함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선고형량이 약 3.5개월 증가하였고, 사건담당 변호인이 국선변호인의 경우 사선변호인 경우보다 약 2개월 선고형량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형인자 중에서 친족관계, 중한 상해,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양형인자 이외의 변인 중에서는 Tobit 모형 적용 시 여성법관의 포함여부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일 경우 선고형량이 무려 20개월 이상 높아졌고, 중한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16개월 이상 선고형량이 높아졌으며, 범행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선고형량은 21개월 정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감경요소 중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약 5개월 정도 형량이 감소하는 반면, 감경요소인 경미한 상해가 있을 경우 형량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형량이 약 11개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0) 회귀모형에 양형기준 상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양형인자들이 판결문에 인용되는 경우가 10.0% 미만으로 매우 드물어 통계적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례수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범죄, 강도범죄의 양형인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통계분석에 필요한 사례수가 충분한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향후 모든 판결문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이 논문에서 분석하지 못한 다양한 양형인자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9〉 성범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효과

	이전				이후			
	Linear(OLS)		Tobit(MLE)		Linear(OLS)		Tobit(MLE)	
	Coef.	t	Coef.	t	Coef.	t	Coef.	t
상수항	21.16	(5.12)**	21.07	(5.19)**	7.59	(1.10)	7.62	(1.12)
[양형인자 이외 변인]								
가해자 연령	-1.00	(-1.45)	-1.01	(-1.49)	-0.85	(-1.03)	-1.06	(-1.20)
피해자 연령	-0.21	(-0.37)	-0.20	(-0.37)	0.93	(0.98)	0.86	(0.88)
여성법관포함	3.58	(2.80)**	3.59	(2.87)**	3.72	(1.79)	4.09	(1.98)*
국선변호인	2.09	(2.02)*	2.13	(2.09)*	-2.50	(-1.22)	-2.72	(-1.36)
면식관계	1.78	(1.75)	1.80	(1.80)	1.73	(0.94)	1.94	(1.07)
[특별양형인자_가중요소]								
친족관계	5.10	(2.58)*	5.11	(2.64)**	20.13	(4.56)**	20.45	(4.72)**
중한상해	6.93	(2.50)*	6.94	(2.56)*	16.39	(2.89)**	16.59	(2.98)**
취약피해자	4.17	(1.44)	4.19	(1.48)	21.08	(3.54)**	21.32	(3.63)**
[특별양형인자_감경요소]								
처벌불원	1.57	(1.49)	1.59	(1.54)	-5.19	(-2.45)*	-5.19	(-2.47)*
경미한상해	5.14	(4.59)**	5.15	(4.70)**	11.36	(4.54)**	11.66	(4.70)**
심신미약	-5.07	(-4.29)**	-5.06	(-4.38)**	0.54	(0.09)	0.80	(0.13)
[일반양형인자_가중요소]								
심신장애유발	10.21	(1.20)	10.21	(1.23)	-1.46	(-0.61)	-1.33	(-0.57)
[일반양형인자_감경요소]								
진지한반성	0.30	(0.28)	0.32	(0.29)	-3.51	(-1.77)	-3.59	(-1.83)
전과없음	-1.61	(-1.65)	-1.59	(-1.67)	-2.30	(-1.11)	-2.21	(-1.07)
R-squared	0.210		-		0.316		-	
Log-likelihood	-		-1208.85		-		-1181.14	
/sigma	9.70		9.50		16.10		15.99	
N	330		330		287		287	

*p<0.05 **p<0.01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성범죄 관련 양형인자의 효과는 더 커진 반면에 양형인자 이외의 요인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인자 중에서도 가해자와 관련한 감경요소보다는 피해자와 관련한 가중요소의 영향력이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양형인자 이외에 재판부에 여성법관이 포함될 경우 선고형량이 다소 높아진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결과이기도 하나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³¹⁾

31) 여성법관이 포함된 사건일수록 보다 심각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사례분석(case

다음으로 성범죄 세부유형별로 양형인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간, 강간상해·치상으로 나누어 토빗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0> 참조).³²⁾ 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양형인자 중 심신미약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와 처벌불원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과 같은 가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나 처벌불원과 같은 피해자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성범죄 세부유형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효과(Tobit Regression)

	강간				강간상해·치상			
	이전		이후		이전		이후	
	Coef.	t	Coef.	t	Coef.	t	Coef.	t
상수항	20.05	(3.03)**	13.25	(1.29)	40.70	(7.84)**	37.22	(3.79)**
[양형인자 이외 변인]								
가해자 연령	-0.56	(-0.61)	1.94	(2.83)**	0.25	(0.22)	-1.64	(-0.91)
피해자 연령	-0.02	(-0.03)	-0.44	(-0.72)	-0.59	(-0.71)	0.46	(0.22)
여성법관포함	3.82	(2.15)*	-0.64	(-0.48)	1.47	(1.07)	-0.10	(-0.03)
국선변호인	2.57	(1.59)	1.96	(1.56)	0.29	(0.24)	1.78	(0.39)
면식관계	0.55	(0.39)	0.29	(0.23)	-0.55	(-0.44)	-1.95	(-0.53)
[특별양형인자_가중요소]								
친족관계	2.60	(1.45)	8.90	(3.37)**	-8.65	(-3.77)**	30.05	(3.94)**
중한상해	-5.96	(-1.58)	1.93	(0.59)	3.45	(1.16)	9.06	(1.16)
취약피해자	7.57	(1.41)	13.98	(1.58)	-1.09	(-0.43)	17.33	(3.14)**
[특별양형인자_감경요소]								
처벌불원	-1.43	(-1.02)	-7.98	(-6.20)**	-3.26	(-2.19)*	-8.18	(-2.00)*
경미한상해	-0.28	(-0.09)	1.34	(0.30)	-1.75	(-0.74)	-7.46	(-1.32)
심신미약	-7.28	(-4.77)**	-8.74	(-1.22)	-6.56	(-3.81)**	20.35	(3.60)**
[일반양형인자_감경요소]								
진지한반성	0.59	(0.37)	-2.07	(-1.39)	-4.70	(-3.32)**	0.97	(0.22)
전과없음	-0.15	(-0.09)	-0.97	(-0.56)	-2.05	(-1.80)	-4.92	(-1.28)
Log-likelihood	-360.49		-536.63		-613.30		-413.13	
/sigma	7.26		7.72		8.17		17.67	
N	106		155		187		97	

*p<0.05 **p<0.01

study) 등을 통해 무엇이 심각한 사건으로 인식되는지, 여성법관이 왜 그러한 사건에 배석하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32) 성범죄 세부유형 가운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회귀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친족관계, 처벌불원,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시행이후에는 친족관계,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심신미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양형인자의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친족관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시행이후에는 매우 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시행이전에는 감경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시행이후에는 오히려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V. 강도범죄 양형실태 비교

1. 양형기준제 전후 선고형량의 변화

가. 세부 범죄유형별 비교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도(특수강도 포함)에 대한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은 평균 24.61개월, 시행이후는 평균 26.47개월로 증가하였으나,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표준편차는 양형기준제 시행이전 9.26개월에서 시행이후 8.52개월로 편차가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도 형량 비교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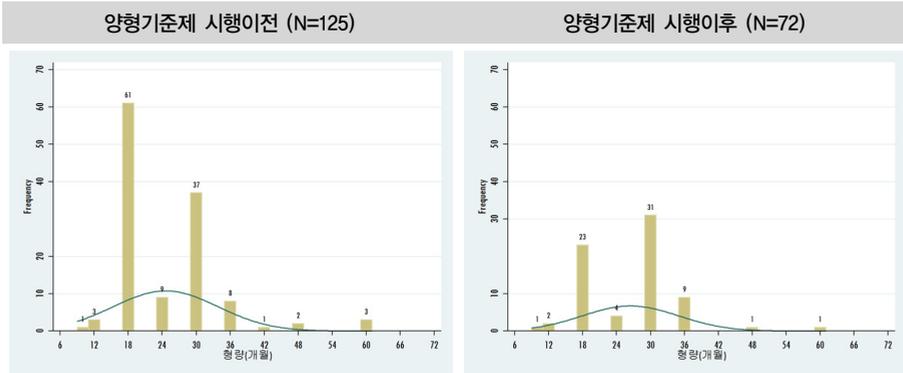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도죄 (특수강도 포함)	이전	(125)	24.61	9.26	-1.40
	이후	(72)	26.47	8.52	

*p<0.05 **p<0.01

강도에 대한 선고형량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강도에 대한 선고형량이 18개월(61건, 48.8%)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개월(37건, 29.6%)이 많았던 반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30개월(31건, 43.1%), 18개월

(23건, 31.9%) 순으로 그 비율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강도 선고형량의 변화



강도범죄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와 달리 양형기준제 시행이전 평균 선고형량이 34.47개월에서 시행이후 평균 43.42개월로 약 9개월 이상 강도상해·치상의 선고형량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준편차는 9.46개월에서 11.20개월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도상해·치상에 대한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면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비교해 선고형량이 다양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12>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도상해·치상 형량 비교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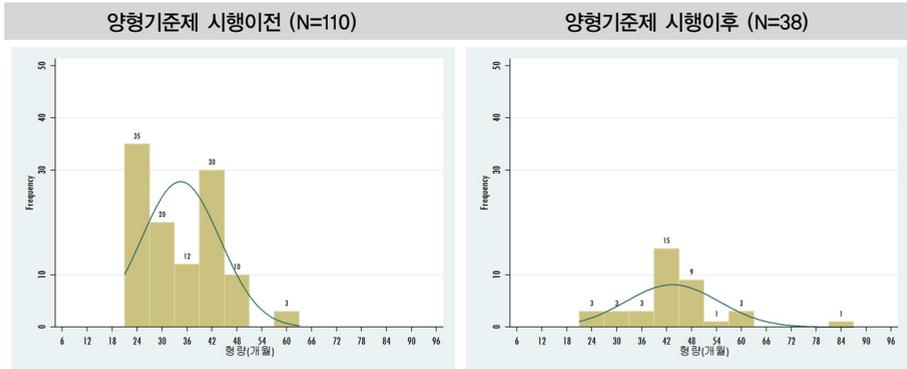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도상해·치상죄	이전	(110)	34.47	9.46	-4.79**
	이후	(38)	43.42	11.20	

*p<0.05 **p<0.01

강도상해·치상의 선고형량 분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상당수가 24개월(35건, 31.8%)부터 42개월(30건, 27.3%) 사이의 형량을 선고 받은 반면, 시행이후에 42개월(15건, 39.5%)부터 48개월(9건, 23.7%) 사이의 형량

을 선고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형기준제 시행이 전과 비교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형량분포가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강도상해·치상 선고형량의 변화



나. 법원 간 선고형량의 편차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도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의 법원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강도범죄의 선고형량에 대한 법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반면, 시행이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법원 간 강도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도범죄 역시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적어도 법원 간 양형편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평균 선고형량이 증가하고 있어 강도범죄에 대한 선고형량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법원 간 강도범죄 형량의 편차

(단위: 개월)

	이전			이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계	(235)	29.23	10.56	(110)	32.33	12.47
법원1	(36)	34.33	12.22	(17)	33.53	9.50
법원2	(43)	29.86	9.93	(5)	40.80	11.54
법원3	(32)	26.38	9.11	(13)	31.85	10.50
법원4	(10)	21.60	5.06	(13)	28.62	7.81
법원5	(64)	31.31	10.55	(13)	30.46	11.35
법원6	(43)	26.51	9.55	(38)	33.58	16.38
법원7	(0)	-	-	(11)	29.45	8.25
법원8	(7)	20.57	4.72	(0)	-	-
F값		4.79**			0.81	

*p<0.05 **p<0.01

2. 양형기준제 전후 집행유예의 변화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도의 경우 집행유예의 비율이 58.0%에서 74.0%로 증가한 반면 강도상해·치상은 집행유예의 비율이 45.0%에서 13.0%로 크게 낮아져 강도와 강도상해·치상의 경향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양형기준제 시행 전후 강도범죄 세부유형별 집행유예 비교

(단위: 백분율)

세부범죄유형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강도죄 (특수강도 포함)	이전	(125)	0.58	0.49	-2.16*
	이후	(72)	0.74	0.44	
강도상해·치상죄	이전	(110)	0.45	0.50	3.59**
	이후	(38)	0.13	0.34	

*p<0.05 **p<0.01

3. 강도범죄 양형인자의 변화

강도범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선고형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양형기준 상의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양형인자 이외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과 Tobit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15> 강도범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효과

	이전				이후			
	Linear(OLS)		Tobit(MLE)		Linear(OLS)		Tobit(MLE)	
	Coef.	t	Coef.	t	Coef.	t	Coef.	t
상수항	29.29	(10.08)**	29.38	(10.28)**	27.80	(6.17)**	27.72	(6.42)**
[양형인자 이외 변인]								
가해자연령	0.03	(0.39)	0.03	(0.38)	0.15	(1.45)	0.15	(1.51)
[특별양형인자_가중요소]								
취약피해자	-1.03	(-0.25)	-1.05	(-0.26)	1.26	(0.24)	1.37	(0.28)
중한상해	7.23	(1.36)	7.19	(1.39)	7.03	(1.29)	7.15	(1.40)
[특별양형인자_감경요소]								
체포면탈폭행	-6.28	(-3.63)**	-6.78	(-3.72)**	-4.03	(-1.37)	-4.01	(-1.40)
경미한상해	6.18	(1.91)	6.34	(2.01)*	19.78	(3.83)**	19.96	(4.08)**
처벌불원	-2.77	(-2.01)*	-2.74	(-2.03)*	-2.57	(-1.27)	-2.39	(-1.23)
[일반양형인자_가중요소]								
계획범행	5.13	(1.85)	5.19	(1.91)	5.39	(1.64)	5.49	(1.75)
동종전과	2.53	(1.37)	2.49	(1.35)	3.48	(1.15)	3.16	(1.06)
[특별양형인자_감경요소]								
경미폭행·협박	-3.68	(-2.03)*	-3.57	(-2.00)*	-6.13	(-2.20)*	-6.36	(-2.32)*
심신미약	-1.06	(-0.74)	-1.23	(-0.85)	-5.29	(-1.34)	-5.29	(-1.42)
진지한반성	2.96	(2.12)*	2.96	(2.15)*	-1.85	(-0.82)	-1.84	(-0.85)
전과없음	-2.03	(1.42)	-2.16	(1.53)	2.38	(-0.88)	2.31	(-0.90)
R-squared	0.17		-		0.36		-	
Log-likelihood	-		-857.07		-		-403.50	
/sigma	9.86		9.70		10.56		10.12	
N	235		235		110		110	

*p<0.05 **p<0.01

먼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모형을 살펴보면(<표 15> 참조), 선고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체포면탈폭행,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경미한 폭행·

협박, 진지한 반성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가해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에 그친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 형량이 경감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2.7개월의 형량이 감소하였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약 3.6개월 형량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진지한 반성이 있을 경우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형량이 약 3개월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³⁾ 이를 통해 볼 때,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가중요소보다는 감경요소를 더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미한 상해, 경미한 폭행·협박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할 경우 선고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경미한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형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경미한 상해와 경미한 폭행·협박의 효과는 오히려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양형인자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양형인자의 효과가 일부 양형인자로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도범죄의 사례수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보다 충분하지 않아 분석결과의 해석에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강도범죄 세부유형별로 양형인자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도, 강도상해·치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6> 참조). 강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모두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은 공통적이나,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경미한 폭행·협박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경미한 상해와 심신미약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강도의 경우 가중요소보다는 감경요소가 주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33)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과 계획범행 간의 관계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진지한 반성’과 ‘계획범행’ 간에는 미미하게나마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만일 사례수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6> 강도범죄 세부유형별 양형인자가 선고형량에 미치는 효과(Tobit Regression)

	강도(특수강도 포함)				강도상해·치상			
	이전		이후		이전		이후	
	Coef.	t	Coef.	t	Coef.	t	Coef.	t
상수항	25.97	(7.50)**	27.63	(7.55)**	30.64	(6.25)**	38.94	(5.33)**
[양형인자 이외 변인]								
가해자연령	-0.02	(-0.22)	-0.02	(-0.23)	0.05	(0.56)	0.09	(0.70)
[특별양형인자_가중요소]								
취약피해자	-1.60	(-0.40)	-1.50	(-0.38)	3.08	(0.82)	4.75	(1.20)
중한상해	(omitted)		-5.05	(-1.77)	2.87	(0.50)	-0.48	(-0.11)
[특별양형인자_감경요소]								
체포면탈폭행	-7.57	(-4.46)**	-7.66	(-3.31)**	-0.43	(-0.11)	-4.61	(-1.60)
경미한상해	-4.70	(-1.77)	32.17	(9.75)**	4.58	(1.41)	7.00	(1.41)
처벌불원	0.97	(0.57)	0.82	(0.53)	-5.98	(-2.38)*	-6.92	(-2.29)*
[일반양형인자_가중요소]								
계획범행	5.67	(1.63)	3.17	(1.75)	5.03	(0.80)	-0.62	(-0.15)
동종전과	3.61	(1.67)	0.90	(0.31)	9.95	(3.05)**	9.66	(2.96)**
[특별양형인자_감경요소]								
경미폭행·협박	-3.74	(-2.09)*	-3.86	(-1.61)	-2.29	(-0.53)	-8.28	(-1.84)
심신미약	-4.37	(-1.34)	-6.75	(-2.05)*	-8.14	(-3.20)**	-13.66	(-2.03)
진지한반성	3.16	(1.86)	1.79	(0.99)	4.47	(1.84)	1.63	(0.47)
전과없음	-3.18	(1.71)	-0.51	(0.28)	0.75	(-0.25)	12.83	(2.63)*
Log-likelihood	-431.03		-229.69		-315.24		-123.29	
/sigma	8.08		6.38		10.93		7.63	
N	125		72		110		38	

*p<0.05 **p<0.01

※ 강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중한상해의 사례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됨.

반면에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공통적으로 처벌불원, 동종전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가운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전과없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강도상해·치상의 경우 강도와 달리 동종전과와 같은 가해자의 범죄전력이 가중요소로 중요하게 고려될 뿐만 아니라 처벌불원 등 피해자와 관련된 요소도 함께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양형인자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가해자의 심신미약이 형량의 감

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전과없음이 가중요소로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도상해·치상의 분석사례수가 충분치 않아 해석에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VI. 결론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신뢰이며, 국가권력 중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는 정당성과 힘을 가지게 되어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고 나아가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민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잃게 된다면 분쟁해결자로서의 지위도, 형벌선고자로서의 지위도, 심판주체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될 것이다.³⁴⁾ 이러한 이유로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정당성과 국민신뢰는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영미법계의 제도 중 하나인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의 증진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양형실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양형기준제의 목표 가운데 형평성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성범죄와 강도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시행이후 판결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간상해·치상, 강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평균 선고형량이 증가한 반면에 강간, 강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평균 선고형량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량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간과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형량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보다 높은 선고형량의 증가)을 보여주었다.

둘째, 선고형량에 있어 법원 간 양형편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와 강도범죄 모두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법원 간 양형편차가 나타났으나, 양

34)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53(3), 2012. 308-309면.

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법원 간 양형편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형기준이 일종의 규범적 작용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의 발표에 따르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2014년 기준 86.7%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³⁵⁾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법원 간 양형편차는 줄어든 반면, 법원 내 양형편차는 더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부범죄유형별 선고형량의 표준편차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대부분 표준편차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원 간 양형편차의 감소현상과 맞물려 개별 선고형량의 표준편차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양형편차가 줄어드는 동시에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³⁶⁾ 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구형시스템을 활용해 양형인자와 형량범위를 상당부분 고려하면서 공소장을 작성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집행유예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성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크게 줄어든 반면, 강도범죄의 집행유예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비교해 시행이후 법원 간 집행유예비율의 편차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와 강도범죄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과 강간상해·치상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60-70%대에서 40%대로 크게 감소한 반면, 강제추행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집행유예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강도범죄 중에서 강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집행유예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강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강간, 강간상해·치상, 강도상해·치상 등 보다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좀 더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35)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5> (2016.06.08. 접속)

36)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 논평자는 법원 간 양형편차가 감소한 것이 각 법원이 맡았던 성범죄나 강도범죄의 세부적 특징이 유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 현상일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논평자의 지적대로 법원 간 양형편차의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사례수의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양형인자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형량선고 시 양형인자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경우 재판부에 여성법관이 포함된 경우라든지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담당하는 경우와 같이 양형인자와 관계없는 요인이 선고형량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형량선고 시 고려되는 양형인자 역시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 비해 시행이후 유의미한 양형인자의 개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효과의 크기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에는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과 같은 가해자 관련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중한 상해, 취약한 피해자, 처벌불원 등 피해자 관련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강간보다 강간상해·치상의 경우에 양형인자가 더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세부범죄유형별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례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강도범죄의 양형인자를 분석한 결과,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비교해 시행이후 주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인자의 수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양형기준제 시행이전의 경우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처벌불원,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가 고려되었다면, 양형기준제 시행이후에는 경미한 상해, 경미한 폭행·협박이 고려요소로 분석되었다. 세부범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강도의 경우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면, 강도상해·치상의 경우에는 동종전과, 처벌불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범죄 역시 세부범죄유형별 분석결과는 더 많은 사례수의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제의 도입이후 우리나라의 양형관행은 형평성이나 객관성 측면에서 일부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범죄유형에서는 양형기준제 시행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상당수가 여전히 양형기준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³⁷⁾ 양형기준

37) 2015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10.9%가 양형기준제도에 대해 ‘잘 안다’고 응답하였다.

제의 도입과 시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가 증진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실체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와 연결시킨다면, 더 많은 사법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알려질 필요가 있고, 알려진 정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만 신뢰가 형성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법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은 이에 대해 아무런 신뢰를 갖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양형관련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고 양형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개략적이거나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변화의 양상과 내용에 대한 모습을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규범적 해석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실증적 접근에 국한되었다는 점, 충분한 사례수의 확보를 통해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양형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후속 연구가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박성훈 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2015. 282면.

38) 이상원,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5(3), 2012. 315-317면.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혜정·기광도(2015),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 노성호·김성언·이동원·김지선(1999),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2015), 『범죄분석』, 대검찰청.
- 박미랑·이민식(2011),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제1기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저스티스』 통권 127호.
- 박성훈·최이문·강우예(201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X): 양형기준제 시행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보화(2011), 양형기준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형사법연구』 제23권 제4호.
- 양형위원회(2008), 『2007년 연간보고서』,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2016), 『2016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 이상원(2012), 사법신뢰형성구조와 재판의 공개,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308-309면.
- 이주형(2009), 최초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1호.
- 장영민·탁희성(1993), 『절도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탁희성·김한균·김성언·최석운(2010),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IV):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양형합리화 정책 성과분석 및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대운·강정민(2013),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연구』 제47권.

[국외문헌]

- Anderson, J. M., Kling, J. R., and Stith, K. (1999). Measuring Interjudge Sentencing Disparity: Before and After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2(S1), 271-308.
- Blakely v. Washington*, 542 U.S. 296 (2004).
- Hofer, P. J., Blackwell, K. R., & Ruback, R. B. (1999). The effect of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on inter-judge sentencing disparit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39-322.
-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AGE publications, Inc.
- United States v. Booker*, 543 U.S. 220 (2005).
- Wooldridge, Jeffrey M. (2013). *Introductory Econometrics*, 6e. Cengage Learning.
- Yang, C. S. (2015). Free at Last? Judicial Discret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Federal Sentencing.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44(1), 75-111.
- 28 U.S.C. § 994 (f) (1988).

Impact of sentencing guidelines on sentencing practices in sexual assault and robbery cases at South Korea

Park Seong-Hoon*·Choi Yi-Moon**

The purpose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is establish fair and objective sentencing standards that is sufficient to satisfy people who has common sense. It was intended that the artic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guidelines would result in the reduction of sentencing disparity and the increase of considering more sentencing factors. As more than six years has passed since the introducing of the guidelines in July 1st 2009, we attempted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guidelines on sentencing practices.

We collected 1092 sentencing (747 sexual assault, 345 robbery) before (in 2003-2004) and after (2013-2014) the introduction of the guidelines. The results show the guidelines achieve goals to some extent. Results from logistic and tobit regression analyses indicated that after the guidelines (1) sentencing for crimes with physical harms (rape with injury, robbery resulting in injury/death) significantly increased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ntencing for crimes without physical harm; (2) the sentencing disparity between jurisdictions decreased; (3) more sentencing determinants were considered in cases of sexual assault but no difference in cases of burglar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finding are discussed.

❖ Keyword: Sentence, Sentencing Guidelines, Tobit Regression, Sexual Assault, Robbery

투고일 : 8월 30일 / 심사일 : 9월 9일 / 게재확정일: 9월 9일

* Researche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h.D. in Sociology

** Assistant Professor,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h.D. in Psychology